##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69

발의연월일: 2020. 8. 11.

발 의 자:김경만·박성준·홍성국

정청래 · 신정훈 · 강선우

남인순 · 김홍걸 · 강병원

설 훈 · 윤미향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20곳을 2022년까지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정부 시책에 따라국내 신설법인 수는 2016년 96,625개에서 2019년 기준 109,520개로, 벤처기업 수는 2016년 33,360개에서 올해 3월 기준 37,216개로 증가하는 등 국내 창업기업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OECD 통계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경우 기회 추구형 창업 비중이 각각 54%, 53%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1%에 불과해 생계형 창업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됨. 또한, 국내 벤처투자 회수의 89%가 기업공개(IPO)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상 창업 후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데 평균 11.4년이 걸려 초기 투자자가 조기에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시 적용하는 세액공제 비율을

20%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인수·합병 과정에서 벤처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
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2$	한 세액공제) ①2
<u>021년 12월 31일</u> 까지 대통령령	023년 12월 31일
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	
기업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합	
병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합병	
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	
도가액"이라 한다)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	
의 <u>100분의 10</u> 에 상당하는 금	<u>100분의 20</u>
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	에 대한 세액공제) ①
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	
이라 한다)이 <u>2021년 12월 31</u>	<u>2023년 12월 31</u>
<u>일</u>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일</u>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 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 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 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 5. (생 략)

<u>100분의</u>	
<u>20</u>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